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2항 중 “대출정지”를 “1인당 대출정지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제7조로 하고 제8조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무료프로그램 운영) 관장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2.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4. 만 60세 이상의 자
5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한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 비율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수강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를 제10조로 한다.

별표3의 구분란 중 “제6조의2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9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연체료) ① (생략)</p> <p>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책당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, <u>대출정지</u>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</p>	<p>제2조의2(연체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1인당 대출정지</p> <p>.....</p>
<p>제6조의2(사용료 등의 반환) (생략)</p>	<p>제7조(사용료 등의 반환)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제8조(무료프로그램 운영) 관장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p> <p>2.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	<p>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</p> <p>4. 만 60세 이상의 자</p> <p>5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한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 비율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수강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10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</p>
<p>부칙</p>	<p>부칙</p>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에 대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.....</p> <p>제9조는 2009년 3월 1일.....</p> <p>.....</p>
<p>별표3(수강료 반환기준)</p>	<p>별표3(수강료 반환기준)</p>
<p>제6조의2제1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</p> <p>제6조2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</p>	<p>제7조.....</p> <p>제7조.....</p> <p>.....</p>